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12. 1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90호로 2011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구민회관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사항 및 사용료 납부와 반환 규정에 대한 구체화· 명확화로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지역문화 예술인과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구민들의 온·오프라인 문화교류 창구인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개설에 따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구민회관의 위치(도로명 주소) 변경(안 제2조)

○ 제물포길 213번지 → 국회대로 596번지

나. 시설위탁 규정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준용사항 추가(안 제4조)

다. 사용료 반환규정의 구체화(안 제12조)

라.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카페활동 기여도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마. 마일리지 부여기준 추가(별표 제2호)

바.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법제처)’에 따른 자구 수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문화예술진흥법」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구민회관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개선하고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개설에 따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항에 구민회관의 위치를 변경된 도로명 주소에 따라 “제물포길 213번지”에서 “국회대로 596번지”로 변경

- 안 제4조제5항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하도록 함.
- 안 제12조제2항제1호에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부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까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15일 전에는 10분의 8을, 10일 전에는 10분의 6을, 5일 전에는 10분의 4를 각각 반환하도록 구체화 함.
- 안 제16조의2에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카페활동 기여도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별표 2로 신설 함.
-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법제처)’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

○ 이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이 2011년 3/4분기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이행결과 제출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회관 시설의 관리 운영 조항에 시설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이 미비되어 있어 위탁 관련 조항에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음

- 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규정에 사용료 반환사유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반환하는 경우 반환범위를 전부 반환과 일부 반환으로 구분하고 사용료 전부 반환의 경우를 명시하고 일부 반환의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15일 전, 10일 전, 5일 전으로 나누고 반환 금액도 각각 80%, 60%, 40%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구민회관 시설 사용계약 체결시 반환하는 경우 반환 금액 및 반환 비율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한 적정한 개정임.

- 지역문화 예술인과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구민들의 온·오프라인 문화교류 창구인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가 개설됨에 따라 카페이용자의 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마일리지 사용용도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문화마니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